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번호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464호로 1991. 12. 31 일부 개정이 되고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586호로 1992. 2. 15 일부 개정이 됨에 따라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를 둠에 따라

- 의원의 의석을 배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함.
-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함.
- 의안이 제출, 발의된 때에는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함,
- 안건이 어느 소관상임위원회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함.
-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음.
- 의회에 예산 및 결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함.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등록) "의회간사에게"를 "의회사무과로"로 한다.

제 3 조(의석배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0조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의안의 회부"를 "상임위원회 회부"로 한다.

제20조중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한다.

제20조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3(심사기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의2(재회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 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중 "2인 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를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로 한다.

제51조의2(위원회의 제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5조의2(연석회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1조(예산안 심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5조(결산의 심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3조제1항중 "일정한"을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으로 하며, "의장은"을 "의장이 단독으로"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간사가"를 "사무과장이"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등록) … 당선증서를 의회 간사에게 제시하고 ……	제2조(등록) …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로 제시하고 ……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간사가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삭 제)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3(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 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6조(회의록 서명과 보존) ① …… ……2인 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 ……	제46조(회의록 서명과 보존) ① ……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
(신 설)	제51조의2(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의 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신 설)	제55조의2(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1조(예산안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61조(예산안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5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65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3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경호) ① ····· …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 ····· ····· ····· 의장이 단독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 의장의 지휘를 받아 간사가 그 수를 정하여 ·····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